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8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5~12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5~13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2015~14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5~15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5~1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5~17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33
2015~18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5~19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2
----------	-----------

제출일자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15. 01. 0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함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3조)

- 건설교통과장 ⇒ 건설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15년 예산 420천원 확보(위원회수당)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2. 16. ~ 3. 0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계획 수립 시 및 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 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 <u>건설교통과장</u>,</p>	<p><u>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 -----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건설과장</p>

현 행	개 정 안
<p>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u>재정계획 수립 시 및 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 시</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 ----- -----</p> <p>제6조(회의) ① ----- -----</p> <p>② ----- -----</p> <p><u>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3
----------	-----------

제출일자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15. 01. 01.시행)이 개정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의 심의
-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대행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32조의3, 제37조, 제37조의2,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1,820천원 확보(위원회수당)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2. 16. ~ 3. 0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포함)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4
----------	-----------

제출연월일	2015. 3. 3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4.9.25)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 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 체결
- 다. 출자·출연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행시 경비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라.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하여 평가
- 마.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실시
- 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15년도 1,900백만원 예산확보
-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15. 2. 26. ~ 3. 18.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군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 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목적 달성의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될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여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

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나.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 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 라.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출	국비	300	300	300	300	300	1,500
	군비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소계	1,900	1,900	1,900	1,900	1,900	9,500
총 비용		1,900	1,900	1,900	1,900	1,900	9,500

3. 관련 의견

-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
- 거창 화강석 신기술 개발 등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 우수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거창군 장학회 출연금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송 재 명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5
----------	-----------

제출연월일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정 시 지역치안협의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
- 지역치안협의회는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시켜야 함에 따라 협의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치안협의회 존속기한 삭제(안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15. 2. 25. ~ 2015. 3. 17.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 둔 사람을 말한다.</p> <p>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삭 제></p> <p><삭 제></p> <p>1. (현행 제3호와 같음)</p> <p>2. ~ 4.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6조(협의회 존속기한) 협의회 존속 기한은 2015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p>	<p><삭 제></p>
<p>제7조(구성) ① (생략)</p> <p>②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거창군의회 의장</p> <p>2. 거창교육청 교육장</p> <p>3. ~ 4. (생략)</p>	<p>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p> <p>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p> <p>①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p> <p><삭 제></p> <p>① ----- ----- ----- -----</p> <p>② ----- -----</p>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6
----------	-----------

제출일자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5.12.31일까지 연장(안 제2조제1항)

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및 기한연장(안 제3조)

○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경감

○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경감

다.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감면축소 및 연장(안 제4조)

○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5경감

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함(안 제5조)

○ 100분의 50경감

마.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취득시점 기준연장함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8조)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사항 신설(안 제9조)

※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78호)

: 거창 덕유산 스파랜드(가조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제55조, 제71조, 제1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6조, 제127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05. ~ 3. 2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으로 하고,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5항”으로 “경감율”을 “경감률”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감률에 추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세”를 “군세”로 한다.

제13조 제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감면”을 “경감”으로 한다.

제14조 중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 그 공장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u>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u></p>	<p>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다.</p>
<p>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u>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u>」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15조(감면 신청) ①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u>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u>」 제48조를 준용한다.</p>	<p>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다.</p>

[별지 제2호서식]

거 창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거 창 군 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7
----------	-----------

제출연월일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2014.11.29.시행)이 개정되어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 조례 중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별도의 개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 조례 개정 시차로 인한 시행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 조례 중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일괄개정함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9개부서 13개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67조제2항 및 제87조의2제2항, 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전 부서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3. ~ 3. 2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공인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수입증지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개정)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지하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반 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8
----------	-----------

제출연월일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들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규정 신설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 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다만,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 '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2. 24. ~ 3.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다만, 「한센인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① 군수는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한센인 정착촌의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1. 한센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p> <p>2. 한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개선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지원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① ----- ----- -----</p> <p>② ----- ----- ----- -----</p> <p>1. ----- -----</p> <p>2. ----- -----</p> <p>3. <u>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다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4. ----- -----</p>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한센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4조제2항(지원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3. 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다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	100	200				300
세출 군 비	100	200				300

3. 관련 의견

- 기초수급자 지원이 상향 조정될 경우 지급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한센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 2015년도 예산확보액(예정) : 100,000천원 (군비100,000천원)

작성자 : 거창군보건소장 이 재 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9
----------	-----------

제출연월일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1.06.시행)개정되어 조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진주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진주보훈지청장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3조제2항)

○ 자 ⇒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13. ~ 2015. 4.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중전 제10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진주보훈지청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인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3.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8. 거창소방서장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p>③ ~ ⑦ (생략)</p>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 6. ----- 7. <u>진주보훈지청장</u> 8. ----- 9. ----- 10. ----- 11. -----<u>사람</u>